

건설업 등록 기준 및 업무내용 안내

업종	기술능력	시설/장비	업무내용
난방시공업 제1종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공학계 학과를 졸업한 자 중 2인 이상	1.수압시험기 1대 이상 2.사무실 전용면적 12제곱미터 이상	
난방시공업 제2종	제1종의 기술능력자격자 중 1인 이상	1.수압시험기 1대 이상 2.사무실 전용면적 12제곱미터 이상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중 1인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 가스, 특수용접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중 1인 이상	-기밀시험설비 -내압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볼트 및 암페어메타 -절연저항측정기(500V1천MΩ) -그밖에 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 내외경마이크로메타, 초음파측정기, 다이알게이지, 도막측정기 등) -각종압력계 -표준이 되는 온도계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저장소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다음 중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 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 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동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 사무실 전용면적 12㎡ 이상	-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이후의 보수공사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장능력 500kg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p>가스시설시공업 제3종</p>	<p>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중 1인 이상</p> <p>1. 다음 각 목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써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온돌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p> <p>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 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p> <p>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도시가스시설 안전관리자양성교육, 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p> <p>다.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 자</p> <p>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p> <p>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p>	<p>-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 사무실 전용면적 12㎡ 이상</p>	<p>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p> <p>-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p> <p>-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p>
<p>비고</p>	<p>1.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전문건설업(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의 경우 : 1억원 2. 가스사용시설 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는 가스사용자가 할 수 있다.</p>		

가스 및 난방시공업 등록규정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①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시(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무등록 시공행위자 처벌규정

제 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4.15)

1.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